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7.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5월 26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3. 6. 20.)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유옥준)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장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동행정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반장 위촉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여 통·반장 운영 체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안 제5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의 용어 정비 실시(안 제3조·제8조·제1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장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동행정 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에서 통장의 위촉은 현행대로 필수사항으로 유지하고 반장의 위촉은 선택 사항으로 변경함.
    - ※ 「지방자치법」 제7조는 행정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둔다고 명시하여 통을 두고 있는 한 통장은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반면, 반장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명시 규정은 없음.
  - 그 외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안 제8조, 안 제10조)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반장 구성원이 점차 고령화되고 맡은 역할이 감소함에 따라 통·반장 운영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 운영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69 호
----------	---------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장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동행정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반장 위촉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수정변경하여 통반장 운영

체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안 제5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의 용어 정비 실시

(안 제3조·제8조·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4. 27. ~ 5. 17./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영등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통에 통장을 두며,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월1회”를 “월 1회”로 한다.

제10조 중 “직무수행시”를 “직무수행 시”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